

의안번호	2206100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4. 12. 3.
추계번호	24D5545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(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)	－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, 매각 등 처분하거나 <u>공중(公衆)에게 개방하기</u> 전에 지상물, 지하 매설물, 위험물,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제5항) ※ (현행) 징발해제 또는 양여, 매각 등 처분하기 전 → (개정안) 징발해제하거나 양여, 매각 등 처분하거나 공중(公衆)에게 개방하기 전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대상·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(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
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게 개방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9월 기준 69개의 미군 기지가 반환완료되어 매각, 군활용 및 원소유자 반환 등으로 처리되었으며, 11개 기지는 반환예정임
 - ※ [참고자료]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공여구역 현황
- 현재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인 ‘환경조사 및 치유’ 사업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등의 정화를 추진중임

- 최근 5년간 ‘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’을 위한 예산은 평균 571억 7,000만원임

[표 1] ‘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(4232-302)’ 예산 현황: 2021~2025년(안)

(단위: 백만원)

2021	2022	2023	2024	2025(안)	평균
56,754	64,524	65,002	54,223	45,349	57,170

자료: 국방부 예산 사업설명자료

-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, 반환공여구역의 정화방법과 단가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며, 2022년 12월 기준 각 정화공법에 적용하는 주요 오염물질과 부피당 적용단가는 아래와 같음

[표 2] 오염물질에 따른 정화공법 및 단가

구 분	토양경작법	토양세척법	열탈착법
오염물질	저농도 유류 (5,000ppm 미만)	중금속, 고농도 유류 (5,000ppm 이상)	다이옥신
단가(㎡ 당)	35~54만원	43만원	204만원

자료: 국방부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기존 국방부 청사 앞 약 10만㎡ 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을 위해 시범개방(2022년 6월 10일~2022년 6월 26일)한 바 있고¹⁾, 어린이정원을 포함한 35만㎡ 부지를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임시개방 중이며, 그 밖에 개방 예정구역은 미정이라는 입장임

- 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 제7조 및 제9조²⁾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

1) 시범개방 개요

- (목 적) 용산공원을 국민정원으로 조성하고자,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의견 수렴 추진
- (개방구역) 장군숙소, 스포츠펠드, 대통령실 남측 구역 등
- (기 간) 2022.6.10. ~ 6.26.

2) 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

제7조(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(생 략)

제9조(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)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- 조성추진위원회를 두고, 동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
- 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 제18조³⁾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도록 되어 있음
 -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게 개방하기 전에 토양오염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반환공여구역 중 공중에게 개방하려는 부지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고, 현장 상황에 따라 정화공법 적용이 가변적이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 - 따라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3) 제18조(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산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.
②·③ (생략)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

[참고자료]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공여구역 현황

	위치	기 지 명
1	서울 용산	용산기지(잔여)
2		수송부
3		캠프 모스 일부
4	경기도 의정부	캠프 스탠리
5	경기도 평택	CPX 훈련장(잔여)
6		캠프 험프리 소총사격장
7		알파탄약고
8	경기도 동두천	캠프 모빌(잔여)
9		캠프 케이시
10		캠프 호비 본체
11	전북 군산	군산비행장 일부

주: 주한미군기지 통·폐합관리계획(2004)에 따라 반환 대상 결정 후 순차적으로 반환 중이며, 2024년 9월 기준 69개 기지가 반환 완료되었음
자료: 국방부, 2024.9.